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직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교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이란, 대학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 설비, 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 또는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에 의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대학의 교원·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출원유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직원이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다만, 제5조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

제 4 조 (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양도증[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접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만 통지한다.

제 5 조 (심의 및 승계)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조 (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발명승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 7 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별지 제4호 서식])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제 8 조 (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 9 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 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간사는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제 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여부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발명에 대한 승인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6.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시기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8.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 13조 (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조 (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교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② 해외출원 비용은 별도 평가를 통해 승계 및 비용지원을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15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은 승계한 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유지·관리하며, 유지조건 및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장 승인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즉시 기록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발명자가 지식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명자가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승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보 상

제 16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실시·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기여자보상금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7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 18조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 20조 (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 21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 22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4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조 (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25조 (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제 3조 (다른 규정의 폐지) 「국민대학교 직무발명보상규정」 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 명 신 고 서					
* 발명의 명칭	* 한글 :				
	영문 :				
* 발 명 자 (국민대학교)	성명	지분(%)	소속기관	직책	연락처(전화/E-Mail)
	한글 :				☎
	영문 :				✉
	한글 :				☎
	영문 :				✉
* 외부발명자 (외부기관)	한글 :				☎
	영문 :				✉
	한글 :				☎
	영문 :				✉
* 관련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명	국가과제번호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 출원희망국	☒ 대한민국 ☐ 미국 ☐ 일본 ☐ 중국 ☐ 유럽 ☐ PCT 중 택일				
공동출원여부	기관명	지분율	기관담당자 및 연락처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종류	☒ 직무발명 ☐ 자유발명				
발명의 현단계	① 아이디어단계 ② 특허만신청 or 등록 ③ 기술개발진행중 ④ 기술개발완료 ⑤ 시제품 개발 ⑥ 실용화단계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 YES		☐ NO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기술분야 ※BT/CT/ET/IT/NT/ST 중 택일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1.		2.		
* 인용 및 참조 특허 (특허, 논문, 시장정보) 키워드					
희망 특허 사무소	☒ 유		☐ 무		
특허사무소 명칭			담당변리사		
위의 발명을 국민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 (인)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양 도 증(지분 표시)					
발명의 명 칭	* 한글 :				
	영문 :				
양도인 (국민대학교 발명자)	인적사항			지분율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양수인	성명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박찬량
		주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내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국민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발명자의 개인정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1년 이후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위한 사항입니다.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 . .

소속 :

성명 : (인)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발 명 설 명 서	
1. 발명의 명칭	* 한글 :
	영문 :
2. 기술 요약 내용	(핵심 내용 간략히 기재) ex) 해당 기술은 기차 속도제어 장치에 관한 기술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열차, 자동차, 선박 등 교통수단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의 장점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위를 센서가 감지하여 여러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간략히 작성해 주셔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저희 산단에서 제공해드리는 <u>해당 특허의 선행기술 조사</u>를 자세히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도면 및 공식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ex) 그림1은 센서가 물체를 감지 할 경우 센서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2는 제동거리의 시작이 멈추는 시점까지의 거리를 확보하여 시간당 속도를 자동 정지 시키는 것을 나타낸 공식이다.
4. 기대 및 효과	(예측할 수 있는 개선효과 간략히 기재) ex) 이 기술이 구현된다면, 열차 진입로에 급작스럽게 생긴 물체에 대해 사람이 인지 하지 않아도 자동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속				
	주소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1.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제16조제1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기 본인은 국민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민대학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국민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신청 이유(요약)	
2. 결정 내용	
년 월 일 국민대학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인)	